

의안번호	2215005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5.12.30.
추계번호	25B689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기후과학위원회가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민의식조사를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6억 2,900만원(연평균 1억 2,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탄소예산의 산출 (안 제8조의2)	194	-	194	-	194	582	116
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안 제20조의2)	47	-	-	-	-	47	9
추가재정소요	241	-	194	-	194	629	126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 산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사업내용과 용역 실시 여부, 용역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연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함. 이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배출량으로 봄(제1항) 1. 2030년: 100분의 35 이상 2. 2035년: 100분의 60 이상 3. 2040년: 100분의 80 이상 4. 2045년: 100분의 95 이상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의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함(제2항)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2050년까지의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를 설정하여야 함(제3항)	
2	안 제8조의2(탄소예산의 산출) 신설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1. 국가 탄소예산의 추정치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3. 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국가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4. 국가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중장기감축목표등에 대한 권고안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방법, 결과보고서의 공개 절차 및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3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가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계획을 확정함(제4항)	의무규정
4	안 제10조의3(집행계획의 수립 등)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함(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통보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5	안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위원회는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시·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제2항)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을 고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하여 시·도계획을 작성하고,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제5항)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제출·보고 및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9항)	
6	안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시·도지사와 지방위원회는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시·군·구계획을 작성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제3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및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7	안 제15조(2050 탄소 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제4항)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 4. 제65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명	의무규정
8	안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및 부진사항과 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한 예산(이하 “기후예산”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8. 제19조의4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2. <u>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국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소통에 관한 사항</u> 1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안 제19조의2(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위원회는 과학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둠(제1항)	의무규정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제3항)	재량규정
		기후과학위원회의 행정, 분석·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과학센터를 설치·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제4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10	안 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 신설	기후과학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예측함(제1항)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과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진전 동향에 관한 사항 6. 국회 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2항)	의무· 재량규정
		기후과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분석·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정책 등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관계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권고를 통보받은 경우 조치계획 등을 기후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제3항 및 제4항의 사항은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다만, 기후과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5항)	의무· 재량규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보고서의 작성 및 권고 및 대국민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11	안 제19조의4(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신설	위원회에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인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둠(제1항) 기후시민회의는 전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함(제2항) 기후시민회의는 토론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12	안 제20조의2(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신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민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음(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3	안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신설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및 온실가스 배출·전망 분석,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관리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둠(제1항)	의무규정
		과학원은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가 자문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과학원은 정책 권고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그 밖에 과학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14	안 제36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운영) 신설	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연구 추진 및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항) 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제3호 - 개정안에 따라 법률에서 2030년부터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의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를 설정할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2	안 제8조의2(탄소예산의 산출)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3	안 제10조제2항(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미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가기본계획 수립지침은 별도의 연구용역 수행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안 제10조제3항(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할 경우,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기본계획은 수립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용역의 내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4	안 제10조의3(집행계획의 수립 등)	×	·제3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할 경우, 집행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등을 위한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국가기본계획의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집행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용역의 내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5	안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	·미대상 -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1)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해당 지침 작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6	안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7	안 제15조(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	·제3호 - 개정안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 규모가 조정되고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추가될 경우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향후 변동되는 위원 구성 규모 및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회의 개최 횟수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8	안 제16조(위원회의 기능)		
9	안 제19조의2(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	·제3호 - 개정안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에 기후과학위원회를 두고,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과학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 구성, 기후과학센터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 방식과 구체적인 업무계획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10	안 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		
11	안 제19조의4(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	·미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의 2026년도 예산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및 숙의를 위한 기후시민회의의 구성·운영예산을 편성하고, 2026년부터 기후시민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므로([참고자료] 참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2	안 제20조의2(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3	안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	·제3호 - 개정안에 따라 종전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개편하여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이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연구, 정책 권고사항 마련 등의 업무 및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정안은 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운영 및 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국립기후과학원 및 정책 연구협의체의 조직규모·구성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14	안 제36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운영)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서 안 제8조의2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탄소예산의 산출(안 제8조의2)

- 개정안에 따라 기후과학위원회가 2년마다 국가 탄소예산²⁾을 산출할 경우,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조(탄소중립시·도계획의 수립 등)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시·도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도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도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제7조(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 등)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시·군·구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군·구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2)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수준을 특정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말한다.

생활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예산 설정은 고도의 분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추계에서는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 산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탄소예산 산출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주한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2021년, 1억 6,000만원), “2022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2023년, 3억원),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향후 NDC 수립 전략 마련”(2023년, 1억 2,250만원)을 유사사례로 준용하여,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을 1억 9,400만원으로 가정함
- 탄소예산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은 추계 첫 해인 2026년부터 2년마다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기후과학위원회가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총 5억 8,200만원(연평균 1억 1,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탄소예산의 산출(안 제8조의2)	194	—	194	—	194	582	116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 산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용역 실시 여부, 용역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안 제20조의2)

□ 개정안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민의식조사(이하 “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등을 할 경우, 조사 의뢰에 따른 대가 지급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 용역 실시사례를 준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소요비용을 추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용역에 4,65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에 관한 용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유사사례 관련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계약금액	주요 조사 내용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주)케이스 택컨설팅	2023. 11.~ 2024.1.	47	· 국민환경의식 및 환경정책에 대한 인지도 · 환경정책 추진의 우선순위 및 개선사항 · 일반국민, 전문가가 바라는 환경정책 추진방향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조사에 관한 용역은 추계 첫 해인 2026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등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만 4,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 조사(안 제20조의2)	47	-	-	-	-	47	9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의 실시주기를 5년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조사 주기, 용역 실시 여부, 용역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 산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사업내용과 용역 실시 여부, 용역 내용 및 용역비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추진계획(안)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진배경

-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관한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등 다각적 국민참여 방안을 마련
 - － 국정과제 40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기후시민회의의 공론장 마련(8.13)

□ 필요성

- 탄소중립 정책 시행에 참여한 사회적 이해관계의 대립상황 발생, 이해당사자 간의 조율, 법제 정비를 위해 국민참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청소년 기후단체 등 장기 감축경로 설정 관련 **헌법소원** 제기('20~'23, 5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요구('24~'25, 충남·경남) 등

□ 추진계획

-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시민회의(가칭)」 구성 및 운영
 - － (구성) 지역·성·연령·직업 등을 고려하여 전 국민 축소판으로 구성
 - * 2050년 당사자가 되는 미래세대(10~30대)의 비율은 약10~20% 추가 모집 검토
 - － (역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쟁점에 대한 논의·공론
- 기후 정책 토론 등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학습지원
 - －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 토론을 위한 전문가·교육자료 지원
 - － 참여자의 지식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러닝 시스템 운영
-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기후·탄소중립 정책 제안 및 실현을 위한 지원
 - － 중장기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화 등 기반 마련
 - － 국민참여 정책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 운영

□ 활동기간 : 매년 약10개월 (‘26~’30)

□ 2026년 예산 : 2,500백만원